

제326회 임시회  
2014. 1. 24.(금)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1. 24(금)  
정책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4년 1월 8일
- 회부일자 : 2014년 1월 9일

다. 상정일자 : 2014년 1월 20일

- 제32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강성조 기획관리실장)

가. 제안이유

- 제안 활성화를 통한 함께하는 충북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와 소통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을 의무화 하는 한편 제안의 실시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안의 종류를 재정립하고 관련규정을 정비(안 제2조, 제4조, 제13조)

- 제안을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출하는 아이디어 제안,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공모제안, 아이디어를 자신의 업무에 적용하여 성과가 있는 경우 제출하는 실시제안으로 구분
- 공모제안 채택·심사기간을 공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하고 실시제안의 제출 기한은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로 명시함
-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편의제공 의무규정 마련(안 제4조)
- 주민과 소통강화를 위한 제안심사 과정 주민평가제 도입(안 제9조)
  - 위원회 심사시 주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 가능토록 함
- 제안 활성화를 위한 실시성과 제고방안 마련(안 제12조, 제17조, 제25조)
  - 실시 가능성을 심사기준으로 도입하고 제안자가 실시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한편 제안실시 우수공무원 및 제안참여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규정 마련

###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최창국)

- 동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국민제안규정(2010년 개정)과 공무원제안규정(2011년 개정)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정비하여 공무원과 주민의 제안 참여를 활성화함으로써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도정에 적용하여 도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안의 채택 여부를 업무 소관 부서의 판단에만 의존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주민평가 방식, 그리고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한 사후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과 함께 향후 규칙 개정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관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주민 또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및 도내 시·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각종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 개선에 관련된 의견 및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도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도정 업무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도지사에게 접수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주민과 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언제든지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자는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이 제안을 제출할 경우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을 기재하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을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 내용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소요기간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안 활성화) 도지사는 주민과 소속 공무원이 제안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접수 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필요한 경우 우수제안 참여유도에 필요한 발표회 등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

### 제3장 위원회

제9조(위원회)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 금액,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창안등급 심사 시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반영 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심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공모제안과 제13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을 사전 심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외부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성을 고려하여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한다.

제11조(수당) ①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수당지급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2조(심사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실시 가능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 여부는 접수된 제안 내용 소관 부서에서 제1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택심사를 실시하여 결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의 실시 가능성, 정책 활용도 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등을 통해 제안내용의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채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보완된 제안도 제안자가 제출한 제안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조회 등)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시 가능성 등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라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불채택제안의 재심)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3조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장 시상 및 보상 등

제16조(채택제안의 등급)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시상) 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 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② 제안참여 및 채택제안의 실시 활성화를 위하여 제안참여 우수부서와 제안실시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지사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충청북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부상금의 지급) ①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최고 3백만원으로 하고, 창안등급에 따른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창안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증정할 수 있다.

③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④ 제17조제2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인사상 특전) ① 도지사는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시·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특전 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시장·군수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의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안자에게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한다.

제20조(상여금의 지급) ① 채택제안을 제출하거나 실시에 기여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이나 공모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채택한 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6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지급액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그 밖의 보상)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 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도지사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성질상 도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를 적용한다.

## 제6장 제안의 사후관리 등

제23조(관리기간) ① 도지사는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 동안의 관리기간을 두어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24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채택제안의 수정 및 보완 등) ① 채택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불채택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제안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활용하도록 한다.

제25조(제안자의 실시과정 참여) 채택제안 실시부서는 제안 실시단계에 제안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정책평가 완료단계에서 제안자가 최종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6조(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시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안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 담당부서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현행 조례

### 충청북도 제안제도 운영조례

(제정) 2008-05-09 조례 제 3086호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 전반에 관하여 도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도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안제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도민 또는 충청북도 및 시·군 소속공무원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개선 및 예산절감과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말한다.
2. "창안"이란 도지사에게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
3. "실행"이라 함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제안자에 따라 도민제안, 공무원제안, 추천제안으로 구분하고, 제안방식에 따라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으로 구분한다.

1. 도민제안 :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제출하는 제안
2. 공무원제안 : 도 및 시·군 소속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
3. 추천제안 : 도내 시·군에서 심사 채택된 제안 또는 실행중인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제안을 채택한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제안
4. 자유제안 : 과제를 자유롭게 선정하는 제안
5. 지정제안 : 도지사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제안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사용 또는 이용하고 있는 것
2.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을 취득하였거나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직무 발명보상조례」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4.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5. 도의 행정과 관련이 없는 민간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관련된 것

## 제2장 제안의 제출 등

제6조(제안의 제출) ① 도민과 충청북도 및 도내 시·군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자유·지정제안은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추천 제안은 시장·군수가 제출한다.

제7조(제안의 공동제출)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도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그 기관 내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접수) ①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청에 의하여 비공개로 처리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제10조(제안의 보완)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보완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제안의 활성화 지원 등) ① 도지사는 자유롭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 홈페이지에 제안사이트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안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상아이디어 모집, 상상토론의 날 운영 등 홍보행사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 제3장 제안심사위원회

제12조(제안심사위원회)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채택 및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제안의 실행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의 충청북도 제안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3조(전문위원)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행, 평가에 관하여 해당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제안의 심사 및 창안의 실시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조사·연구하며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실무위원회) ① 도지사는 접수된 제안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실무위원회에서는 제안내용이 제5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에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의한다.

제15조(수당)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수당지급은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4장 제안의 심사

제16조(심사구분) 도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은 따로 구분하여 심사한다.

제17조(심사기준 등) ① 도지사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도지사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직접 통지하거나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견조회 등) ① 도지사는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또는 「저작권법」 등에 의하여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조회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실무위원회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지 아니하고 불채택 처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험·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도지사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실행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5장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 등

제21조(창안의 등급)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은상·동상·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표창규정」·「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표창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③ 창안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의 공적심사는 위원회의 심의로 대신하고, 충청북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부상금의 지급) ① 창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도민의 경우 최고 5백만원으로, 공무원의 경우 최고 3백만원으로 하며 창안의 등급 및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② 제안이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23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자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제24조(인사상 특전) ① 도지사는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제안자가 인사상 특전 대상자에 해당하나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특전부여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제안자가 소속된 시장·군수에게 인사상 특전 부여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상 특전 부여의 권고를 받은 시장·군수는 제안자에 대하여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그 밖의 보상) 제안의 전시 등의 필요에 의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 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6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도지사는 창안이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

## 제6장 창안의 사후관리

제27조(관리기간) 도지사는 창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행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창안이 직접 실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행할 수 있다.

제29조(실행의 권고) 도지사는 창안이 다른 기관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행을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실행성과의 평가) ① 창안을 실행하는 기관의 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실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행 및 평가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31조(규칙) 이 조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관련법령 발췌

###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안제도) ①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위한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둔다.

②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국민제안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안전행정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국민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행정기관의 장에게 국민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국민제안을 제출하려는 국민은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 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국민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출된 국민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⑥ 안전행정부장관 및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이 국민제안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의 접수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제안자가 국민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별 국민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 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과정에서 실시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실험·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걸리는 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의 장은 의뢰한 실험·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⑥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아니한 국민제안에 대하여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택 여부를 재심사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를 요청한 국민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행정에 적용하여 실시하거나 부분적인 수정·보완을 거쳐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국민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로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의 증대가 있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채택 및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4조의2(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제안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 □ 공무원제안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마.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제안자가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공모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5. "채택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6. "자체우수제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7. "중앙우수제안"이란 안전행정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① 아이디어제안 및 실시제안은 제안자가 제안 내용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공모제안은 공모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방문·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 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상여금의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로서 제안자와 제10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하 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상여금 지급기관) ① 제20조의 상여금은 안전행정부장관으로부터 상 여금의 지급결정 통지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기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관계 기관이 협의하여 상여금 분담액을 정한다.

③ 상여금 지급기관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여금 지급기관이 다음 연도의 예산에 이를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제24조(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 ① 국가는 채택제안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 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 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국가 승계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등록보상금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을 적용한다.